

보도시점

2023. 5. 4.(목) 14:00
(금요일 조간)

배포 2023. 5. 4.(목)

기업 통근버스, 수소버스로 전환... 환경부·기업·지자체·운수사 업무협약

- 통근버스 전환 계기로 수소버스 대중화 앞당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4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7개 기업*, 12개 지자체**, 7개 운수사***와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포스코 이앤씨, SK실트론, 현대자동차, SK E&S

** 서울, 인천, 부산, 경기, 충북, 경북, 성남, 평택, 이천, 청주, 포항, 구미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제로콜투어, 뉴제로콜투어, 신백승 여행사, 수도권관광, 우진관광

올해 4월 수소 고상버스가 출시되면서 저상버스(시내버스 등)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통근버스 등 고상버스도 수소버스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환경부는 수소 고상버스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근버스를 점진적으로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간 수소버스는 지자체 수요를 중심으로 보급*되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업의 자발적인 수소버스 전환 선언을 담은 만큼 수소버스 도입 주체가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는 전환점이자, 수소버스 대중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2년까지 보급된 수소버스 283대 모두 준공영 시내버스

이번 업무협약은 참여기업의 통근버스를 2023년까지 250대 이상, 2026년까지 2,000대 이상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협약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협약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버스의 구매 보조와 성능보증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수소충전 기반 확충과 관련 기업 및 운수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확산을 위해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는 신속한 수소버스 전환을 위해 충분한 구매 보조금 확보와 적시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소충전 기반 확충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7개 기업은 버스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수사와 협력하여 통근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또한, 수소버스 제작사인 현대자동차는 협약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충분한 물량의 수소버스를 생산해 공급하고,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는 수소 통근버스 운행 시 충전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수소 충전소를 적재적소에 설치해 운영한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수소 통근버스 전환 사례를 대표적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모범사례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수송부문 목표인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올해 3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 제작사, 운수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수소차는 충전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어 충전불편 우려, 전기차 대비 낮은 인식 등 몇가지 진입장벽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소되면 충분히 보급될 수 있다. 특히 이번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은 소통 노력의 첫 결실이다.

* 수소버스 기준 10~20분이면 충전 완료,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운행 가능

이와 함께 환경부는 단순 차량 보급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수소 버스를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운수사와 협력하여 수소버스 상표(브랜드) 발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수소 고상버스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의 출퇴근길을 함께하는 통근버스의 수소 버스 전환으로 수소차 대중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항버스, 지역 시내버스까지 신속하게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등 수소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 문안. 끝.

담당 부서	기후변화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6880)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김유란 (044-201-6881) 정윤희 (044-201-6882)



□ 추진 배경

- 2030 NDC 무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상용차 보급지원단’ 구성(’23.3~), 이해관계자(지자체, 운수사 등) 소통을 통해 민간 수요발굴 본격화
* ’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이 중 수소차는 30만대) 보급
- ’23.4월 수소 고상버스 출시 계기로 민간기업 통근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환경부-지자체-기업-운수사 업무협약* 추진
* 민간 주도로 수소버스를 대규모 도입하는 최초 사례

□ 협약식 개요

- (협약명)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
- (時/所) ’23.5.4.(목), 14:00~15:00/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 (참석기관) 환경부, (수소버스제조사)현대차, (수소충전/공급사업자)SK E&S
(지자체)서울 인천 부산 경기 충북 경북 성남 평택 이천 창원 포항 구미
(선도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포스코 이앤씨, SK실트론
(운수사)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제로쿨투어, 뉴제로쿨투어, 신백승 여행사, 수도권관광, 우진관광

□ 세부 일정

시간	내 용
14:00 ~ 14:02	○ 개회 및 국민의례
14:02 ~ 14:05	○ 내빈 소개
14:05 ~ 14:16	○ 인사말씀(환경부장관, 지자체 대표)
14:16 ~ 14:30	○ 대표 기업·운수사 브리핑
14:30 ~ 14:35	○ 전문가 정책제언
14:35 ~ 14:40	○ 수소버스·충전소 홍보영상 시청
14:40 ~ 14:45	○ 업무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14:45 ~ 15:00	○ 수소 고상버스 시승
15:00~	○ 폐회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서

환경부 등 협약기관은 ESG 경영을 지향하는 선도기업의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기존의 내연기관 통근버스를 2023년까지 250대 이상, 2026년까지 2,000대 이상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협약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당 협력체계를 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관) 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협약기관(이하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정한다.

1. 환경부
2.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성남시, 평택시, 이천시, 청주시, 포항시, 구미시
3. ESG 선도기업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이앤씨, 포스코, SK실트론
4. 운수사업자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제로쿨투어, 뉴제로쿨투어, 신백승 여행사, 수도권광, 우진관광
5. 현대자동차(주)
6. SK E&S(주)

제3조(기관별 역할) 각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상호 협력한다.

1. 환경부는 수소버스의 성능보증기간 확대 및 구매 보조, 수소충전소 확충,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ESG 선도기업이 신속하게 수소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구매 보조금 확보와 적시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수소충전소 확충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3. ESG 선도기업은 현재 사용 중인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운수사업자는 기존의 내연기관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신속하게 전환한다.
5. 현대자동차(주)는 협약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수소버스를 생산·공급한다.
6. SK E&S(주)는 수소 통근버스 운행 시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액화수소 충전소를 적재적소에 설치·운영하고 액화수소를 적기에 공급한다.

제4조(수소통근버스 확대) 환경부와 운수사업자는 수소 통근버스로의 전환을 위해 수소 버스에 대한 공동브랜드 발족, 운수사업자의 ESG 경영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수소 통근버스의 충전편의 개선 및 그 밖의 제도개선 발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제5조(성과공유·홍보) 협약기관은 제3조에 따른 기관별 협약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고 그 성과를 ESG 경영 사례로 적극 홍보한다.

제6조(협약 효력 및 기간)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는 날로부터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협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7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대외 공개하려는 경우 여타 협약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각 협약기관은 법률상 절차 및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을 이행하며 협약기관간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해야 하거나, 본 협약서 내용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본 협약서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기관 간 협의 하에 처리한다.

이 협약서는 협약기관 간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5월 4일